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90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장혜영·배진교·강은미

류호정 · 심상정 · 이은주

조응천 • 이상민 • 양정숙

최형두 · 최기상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계정수는 1,178만개, 시 가총액은 19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아직 현행법상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과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15.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평가액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 및"을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2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	3
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	
識財産權)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신 설></u>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u>따른 가상자산</u>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	3
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	
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5.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u>평가액</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 • 부동산 | 저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 서 "재산등록 · 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 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 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fl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
<u>신용정</u>
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 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 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 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 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 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 및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